

「 』

[2010. 3.19] [22075 , 2010. 3.15,]

() 02 - 2023 - 8525

1 () 「 」

. < 2005.12.27 >

2 <1999.8.7 >

3 <1999.8.7 >

4 <1999.8.7 >

5 <1999.8.7 >

6 <1999.8.7 >

7 <1999.8.7 >

8 <1999.8.7 >

9 <1999.8.7 >

10 <1999.8.7 >

11 () , . . . (" . ") . . () 「 」 (" ") 6 , .

. < 2004.7.30, 2005.12.27, 2007.12.13, 2008.2.29, 2010.3.15 >

12 () 7 (" ") 「 」 11 3 < 2005.12.27, 2007.12.13 >

3 , . 「 」 7 , 「 」 33

. <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

13 ()

1. 가

2. 가

3. 28

4.

5.

14 () ()
8 (. .)
) .

15 <2007.9.28>

16 <2007.9.28>

17 <2007.9.28>

17 2 <2007.9.28>

17 3(.) 23 2 2
, . . <
<2008.2.29, 2010.3.15>

.< 2008.2.29, 2010.3.15>

1.

2.

3.

4.

5. 가

6.

1.

2.

3.

4.

5.

.< 2008.2.29,

2010.3.15 >

[2005.12.27]

17 4()

23 2

. < 2008.2.29, 2010.3.15 >

1

. . .

2

. < 2008.2.29,

2010.3.15 >

[2005.12.27]

18 () 가

24 1

. .

1

1.

2. .

3.

24 2 5 "

"

. <

2008.7.24 >

1. 가 가

2. 31 (" ")

3. . .

19 () 26 1

65

(" ")

1

. <

2003.5.29 >

65 가

20 () 27 1

. (" ") 2 1 . , .

1 2

. < 2008.2.29, 2010.3.15 >

27 1

2

20 2() 33 2 6

1.

2.

[2007.12.13]

[20 2 20 3 <2007.12.13>]

20 3() 39 4 2 가 39
5 1 24

.< 2007.12.13, 2008.12.31, 2010.3.15>

[2004.7.30]

[20 2 , 20 3 20 4 <2007.12.13>]

20 4() 가 39 5 1

[2008.7.24]

20 5() 39 5 2

1 .< 2005.12.27, 2006.6.12>

1. 「 」 11 가

2. 7 가

5

3. 「 」 2

[2004.7.30]

[20 4 <2007.12.13>]

21 () 40 1 3
() 가 가

3

.< 1999.8.7, 2007.12.13, 2008.2.29, 2010.3.15>

40 4

3

.< 1999.8.7, 2007.12.13, 2008.2.29,

2010.3.15 >

22 () 45 2

23 2 1

가 가 . < 2005.12.27 >

45 2

27 28

가 가 , 「

」 1

. < 2005.12.27 >

45 2

33 1

• 35 1

• 37 1

39 1

가 가

. < 2005.12.27 >

23 () 46 1

「 」

가 가

. < 2002.3.9,

2005.12.27 >

24 () 47

가 가 .
. < 2004.7.30, 2007.12.13 >

1. 32 1

2. 34 1 1 • 2

3. 36 1 가

4. 38 1 가

5. 39 5 1

가 가 47

「 」 1

. <

2005.12.27 >

1 가 가

「 」 43 가

. < 2005.12.27 >

25 () 51

. < 2007.12.13 >

1. 가 • 가

2. 1

1

.< 2008.2.29, 2010.3.15>

26 <2007.12.13>

27 () 61 2 2 .

[2008.7.24]

< 22075 ,2010. 3.15>

1 () 2010 3 19 .< >

2 () <47>

<48>

11 , 17 3 1 • 2 6 • 4 , 17 4 1 • 3 , 20 1 20 3 2
" 가 " " " .

20 1 , 21 1 • 2 25 3 " 가 " " " .

<49> <187>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 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 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정 2008.7.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1조의2제1항	200만원
2.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61조의2제1항	300만원
3. 법 제3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법 제61조의2제1항	200만원
4. 법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50만원
5.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100만원